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2593, 2016다212609, 2016다212616, 2016다212623,
2016다212630, 2016다212647(중간확인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부당이득금반환등 · 부당이득금반환등 · 부작위위법(중간)확인의
소 · 명의신탁존부중간확인의소 · 소유권(중간)확인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2593, 2016다212609, 2016다212616, 2016다212623,
2016다212630, 2016다212647(중간확인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15700, 2015나9600 판결

전문

원고(중간확인원고), 상고인A

피고(중간확인피고), 피상고인1. 대한민국

2. B

3. C

4. D

5. E

피고4. 보조참가인F

판결 선고 2016. 12. 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15700, 2015나9600(중간확인의소),
2015나9617(중간확인의소), 2015나21068(중간확인의소), 2015나26285(중간확인의소),

2015나28793(중간확인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57조에 관한 법리, 민법 제680조에 관한 법리,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보조참가 관련 소송절차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